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264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도결의원안) ..	2

I. 개요

1.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2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도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6.
- (3) 회 부 일 : 2025. 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도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안 제29조의9 신설) ○ 감면요건 -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감면기한 - 근무시작일로부터 10년 ○ 감면율 - 첫 5년 : 100% - 다음 5년 : 50% ○ 감면한도 - 500만원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안도결의원안 2025.1.6. 제출 (의안번호 7264)

☐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기업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2023년 6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목적으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

발전법”)을 통합한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2023.07.10. 시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개인·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 기회발전특구¹⁾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²⁾.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11.6.일자로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지정을 고시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의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음.³⁾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의 닻을 올리다”, 2024.11.6.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현황]

14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



□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위치한 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근로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기회발전 특구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8.8%에서 2023년 50.8%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19~34세 청년 인구 중 수도권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8년 51.7%에서 2023년 5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5년 48.4%, 2010년 49.1%, 2015년 50.1%, 2020년 5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총고정자본 투자에서 수도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증가하고 있음.

그 밖에도, 2021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518개사(51.3%)가 서울에, 180개사(18%)가 경기도에, 38개사(3.8%)가 인천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 분포한 기업이 73.1%에 달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임.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

4)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6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2024

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⁵⁾, 개정안과 같이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할 경우 이러한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정착을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의 도입을 고민할 것을 제언한 바 있음.⁶⁾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특구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상 세제지원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경우 해당 특구에 창업·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제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특구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다른 특구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5)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정다연,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7.19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총 14개의 지역에 총 규모 약 33.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⁷⁾, 해당 특구만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감면제도는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둘째, 개정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 대기업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대기업 근로자에게까지 세제지원을 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인력수급 여건이 양호한 기회발전특구 내 대·중견기업까지 아울러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⁸⁾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7)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의 닻을 올린다”, 2024.11.6. 산업통상자원부

8) 청년 등이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